

행정기본법의 조문별 해설

(제5조~제6조)

제1장 총칙

행정기본법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행정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행정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과 원칙, 기준 및 취지에 부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시행일 : 2021. 3. 23.]

I. 조문의 취지와 의의

「행정기본법」은 행정에 관한 기본법 또는 일반법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점에서 다른 법률과 규율내용이 중첩될 수 있는바, 제5조는 「행정기본법」과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규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는 「행정기본법」의 법적 성격을 고려하여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구체적 사안에서 있어 법률 적용의 문제(제1항)와 다른 법률의 제정·개정의 문제(제2항)를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 제5조 제1항은 「행정기본법」의 일반법적 성격을, 같은 조 제2항은 「행정기본법」의 기본법적 성격을 가지는 점과 관련된다.

「행정기본법」은 원칙적으로 모든 행정작용에 적용되며, 「행정기본법」이 다른 법률보다 실체법적으로 우월한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개별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개별법이 우선 적용되도록 할 필요가 있었다. 또한 행정에 관한 일반적인 원칙과 개별 행정작용의 기준 및 방법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한 법으로서 개별법의 총칙 규정으로 기능하는 점에서, 개별법이 「행정기본법」의 원칙 및 기준과 조화되도록 할 필요가 있었다.⁹²⁾

II. 조문의 내용

1. 「행정기본법」과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5조 제1항)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행정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제1항은 행정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 「행정기본법」이 적용되도록 함으로써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서 「행정기본법」의 일반적 성격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 즉 「행정기본법」에 정한 내용과 다른 내용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이 「행정기본법」의 해당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되도록하였다. 개별 행정 분야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개별법에 의해 「행정기본법」과 다른 내용의 규율이 가능하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개별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행정기본법」이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된다.

참고로 「행정기본법」과 「행정절차법」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면, 「행정절차법」은 행정절차에 관한 일반법이므로, 실제적 규정을 중심으로 한 「행정기본법」과는 그 규율범위가 다르다는 점에서 법률간 특별한 모순과 충돌은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행정기본법」은 행정 전반을 규율하는 법인데 비해, 「행정절차법」은 행정절차에 관한 규율을 본질로 하는 점에서 「행정기본법」의 특별법으로 볼 수 있을 것이나, 향후 두 법의 통합에 대해 검토와 논의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2. 개별법의 「행정기본법」에의 부합(제5조 제2항)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② 행정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과 원칙, 기준 및 취지에 부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제2항은 「행정기본법」은 다른 법률의 제정·개정에 있어 기본적 지도원리가 된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행정기본법」의 기본법적 성격을 밝히고 있다.

제5조 제1항이 개별행정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행정기본법」에 대한 개별법의 우선적 효력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기본법」은 행정에 관한 일반적인 원칙과 개별 행정작용의 기준 및 방법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한 법으로서 개별법에 대한 총칙 규정으로 기능할 필요가 있는바, 「행정기본법」의 일반법적 성격과 기본법적 성격을 조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제5조 제2항의 취지를 고려할 때, 개별행정의 특수성을 반영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을 둘 수는 있되, 그러한 특별규정은 폭넓게 인정할 것이 아니라

자제될 필요가 있다. 또한 개별법을 제정 또는 개정할 때에 「행정기본법」과 중복되거나 「행정기본법」과 달리 정할 필요가 없고 그에 따르면 되는 사항 등은 「행정기본법」에 맞추어 개선 또는 정비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서, 개별법에서 「행정기본법」과 달리 정할 필요가 있으면 그에 관한 특별한 규정을 두면 되고, 통일적인 규정은 「행정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면 되기 때문에 개별법에 불필요한 규정 등은 정비함으로써 행정법 전체가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 것이다.

Q&A 질의·답변

Q. 「행정기본법」이 정한 기준이나 절차와는 다른 내용의 개별법 규정이 있는 경우 어느 법의 기준과 절차에 따라야 하는지요?

A. 「행정기본법」은 그 명칭에도 불구하고 제5조 제1항은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서 개별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개별법이 우선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별법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야 합니다.

Q. 개별법의 제정이나 개정이 「행정기본법」 제5조 제2항에 반하여 「행정기본법」의 목적과 원칙, 기준 및 취지 등에 반하여 제정 또는 개정된 경우에도 법적 효력이 있나요?

A. 「행정기본법」은 다른 법률과 동등한 지위에 있는 법률로서 「행정기본법」이 다른 법률에 비해 실체법적으로 우선적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행정기본법」 제5조 제2항은 선언적 규정에 불과하여, 「행정기본법」 제5조 제2항에 위반된다고 하더라도 개별법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오히려 「행정기본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개별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로 보아 개별법이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제2절 기간의 계산

행정기본법 제6조 (행정에 관한 기간의 계산)

제6조(행정에 관한 기간의 계산) ① 행정에 관한 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법」을 준용한다.

② 법령등 또는 처분에서 국민의 권익을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 권익이 제한되거나 의무가 지속되는 기간의 계산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르는 것이 국민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경우에는 기간의 첫날을 산입한다.
2.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도 기간은 그 날로 만료한다.[시행일 : 2021. 3. 23.]

I. 조문의 취지와 의의

행정 영역에서 기간 계산에 관해 「민법」을 준용하는 등의 일반적 규정을 둔 법률이 없었고, 개별 법률에서 「민법」을 준용하거나 개별적으로 규정하다보니 일반국민이나 공무원에게 혼란이 있어왔다. 「행정기본법」은 행정법 관계에 적용되는 기간의 계산방법을 명시하여 일반국민과 공무원의 이해를 돕고 기간 계산에 관한 혼란을 줄이고자 하였다. 또한 국민의 권익을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 그 지속되는 기간의 계산이 국민에게 유리하게 적용되도록 그에 관한 규정을 별도로 두었다.

제6조는 행정법 관계에서도 「민법」의 기간 계산규정이 준용됨을 명시하면서도, 행정법 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한 예외를 인정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다만, 제6조 제1항은 행정법 관계에서 「민법」의 기간 계산 규정을 ‘준용’하도록 한 것이므로, 이 법과 개별 행정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기간 계산의 방식이 다를 수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II. 조문의 내용

1. 행정에 관한 기간 계산의 「민법」 준용 원칙(제6조 제1항)

제6조(행정에 관한 기간의 계산) ① 행정에 관한 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법」을 준용한다.

행정에 관한 기간 계산도 이 법 또는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법」이 준용되므로 그에 관한 「민법」 규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1)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경우

가. 기간 첫날의 산입 여부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첫날)은 산입하지 않는다. 그러나 기간이 오전 영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그렇지 않다(「민법」 제157조). 연령 계산에는 출생일을 산입한다(「민법」 제158조).

나. 기간의 만료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 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한다(「민법」 제159조). 즉 기간 말일 24시가 도래하면 기간이 만료한다.

다. 역에 의한 계산

기간을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역에 의하여 계산한다(「민법」 제160조 제1항). 역에 의한 계산이란 기간의 시작점과 만료점을 순간에서 순간까지 정확하게 계산하지 않고 달력에 따라 계산하는 방법을 말한다. 주, 월 또는 연의 처음으로부터 기간을 기산하지 않는 때에는 최후의 주, 월 또는 연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한 날의 전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월 또는 연으로 정한 경우에 최종의 월에 해당 일이 없는 때에는 그 월의 말일로 기간이 만료한다(「민법」 제160조).

라. 공휴일 등과 기간의 만료점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민법」 제161조).

① 공휴일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에 공휴일을 열거하고 있다.100) 같은 법 제3조에서는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에는 대체공휴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행정의 기간 계산과 관련해서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의 내용(재외공관의 공휴일, 대체공휴일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도 고려해야 한다. 한편, 「지방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위 규정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 발생한 역사적 사건을 기념할 수 있는 날을 지방공휴일로 지정할 수 있고, 지방공휴일은 지방자치단체의 관공서가 특별히 휴무하는 날을 말하므로,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행정작용에 관하여는 「민법」 제161조에서 정하는 공휴일에 포함된다.

② 기일에의 준용

「민법」 제161조는 기일에 대한 별다른 언급이 없으나, 기간의 말일과 기일의 말일을 달리 취급할 필요가 없으므로 같은 조는 기일에도 준용되어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대법원 판례 중에는 변제기를 특정일로 정한 경우에 해당 변제기가 공휴일이라면 그 다음 날 변제공탁을 함으로써 기한 내 채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판례가 있다.

행정법 관계에서 기간의 계산에 관한 「민법」 제161조가 기일에도 준용되어야 하는지에 대하여는 별다른 논의가 없다. 그러나 토요일과 공휴일이 말일인 경우의 특례를 둔 「민법」

제161조의 취지에 비추어, 「민법」 제161조는 당사자가 해당 기일까지 일정한 법률행위 또는 사실행위를 해야 하는 경우에만 준용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2) 기간을 시, 분, 초로 정한 경우

기간을 시, 분, 초로 정한 때에는 즉시로부터 기산한다(「민법」 제156조). 기간을 시, 분, 초로 정하는 경우 자연적 계산법에 따름을 명확히 한 것이다. 기간을 시, 분, 초로 정하는 경우에는 개별 법령에서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한 자연적 계산법을 따르게 된다. 「행정기본법」 제6조 제2항은 기간을 일, 주, 월, 연으로 정한 경우에만 적용되므로, 기간을 시, 분, 초로 정한 때에는 「행정기본법」 제6조 제2항이 적용될 여지는 없다.

(3) 적용사례

가. 「행정기본법」의 이의신청기간

제36조(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① 행정청의 처분(「행정심판법」 제3조에 따라 같은 법에 따른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이의가 있는 당사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당사자가 2020. 11. 25.(수요일) 처분을 받은 경우 초일을 산입하지 않고 계산하여 30일이 되는 날은 2020. 12. 25.(공휴일, 금요일)이나, 「민법」 제161조를 준용하여 2020. 12. 28.(월요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나. 「행정절차법」의 사전통지 기간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①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당사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 5. <생략>

6. 의견제출기한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행정청은 청문을 하려면 청문이 시작되는 날부터 10일 전까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당사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은 청문 주재자의 소속·직위 및 성명, 청문의 일시 및 장소, 청문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등 청문에 필요한 사항으로 같음한다.

③ 제1항 제6호에 따른 기한은 의견제출에 필요한 기간을 10일 이상으로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 청문을 위한 사전통지 기간(「행정절차법」 제21조 제2항)

청문일이 2021. 7. 5.(월요일)이라면 늦어도 2021. 6. 24.(목요일) 자정까지 당사자들에게 사전통지서가 도달할 수 있도록 충분한 여유를 두고 통지서를 송달해야 한다.

기간의 첫날은 산입하지 않으므로 2021. 7. 4.부터 계산하여 10일째인 2021. 6. 24. 자정까지가 ‘청문이 시작되는 날부터 10일 전’에 해당한다.

☞ 의견제출기한(「행정절차법」 제21조 제3항)

의견제출기한은 사전통지서 송달에 소요되는 기간과 의견제출에 필요한 10일 이상의 기간을 고려하여 정해야 한다. 의견제출기한은 “2021. 3. 26.까지” 등 그 기일을 특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의견제출기한을 정하는 데에는 행정청의 재량이 있으므로 토요일이나 공휴일이 기일이 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

다. 「행정기본법」의 인허가의제 협의기간

제24조(인허가의제의 기준) ④ 관련 인허가 행정청은 제3항에 따른 협의를 요청받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제5항 단서에 따른 절차에 걸리는 기간은 제외한다)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단에서 정한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는 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연장한 기간을 말한다) 내에 협의 여부에 관하여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협의가 된 것으로 본다.

⑤ 제3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관련 인허가 행정청은 해당 법령을 위반하여 협의에 응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관련 인허가에 필요한 심의, 의견 청취 등 절차에 관하여는 법률에 인허가의제 시에도 해당 절차를 거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이를 거친다.

☞ 관련 인허가 행정청이 2021. 7. 5. 주된 인허가 행정청으로부터 협의를 요청받은 경우라면 2021. 7. 26.까지 의견을 제출하지 않으면 협의가 된 것으로 본다.

기간 계산 예시

- 협의를 요청받은 날: 2021. 7. 5.(협 의서 가 도 달 한 날 을 의 미)
- 기산일: 2021. 7. 6. ← 첫날을 산입하지 않음
- 기간만료일: 2021. 7. 26. ← 기산일부터 20일째 되는 날인 2021. 7. 25.은 일요일이므로 그 다음날인 2021. 7. 26. 기간 만료
- 제5항 단서에 따른 절차가 없을 경우 2021. 7. 26.까지 의견을 제출해야 함

라. 인허가 등의 신청기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3조(사업시행자의 지정) ⑤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자는 지정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제15조 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여야 하며, 이 기간에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사업시행자 지정의 효력을 상실한다. <단서생략>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15조(실시계획의 승인신청 기간) 법 제13조 제5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주무관청이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년을 말한다.

☞ 2020. 2. 7.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경우 승인신청 기간의 말일은 2021. 2. 8.이다.

기간 계산 예시

· 기산일: 2020. 2. 8. ← 첫날을 산입하지 않음

· 기간만료일: 2021. 2. 8.

연의 처음부터 기간을 기산하지 않는 때에 해당하므로 최후의 연(2021)에서 그 기산일(2. 8.)에 해당하는 날의 전일로 기간이 만료하는 것이 원칙이나, 2021. 2. 7.이 일요일이므로 그 다음 날인 2021. 2. 8. 기간이 만료함.

·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자가 2021. 2. 8.까지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해야 함.

「하천법 시행규칙」 제19조(하천점용허가의 유효기간 등) ① 법 제33조 제8항에 따른 하천점용허가의 유효기간은 별표 5와 같다. 다만, 해당 하천구역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사업을 시행할 계획이 있거나 그 하천점용의 목적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점용허가의 유효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④ 제1항 본문에 따른 하천점용허가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그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별지 제32호서식의 하천점용허가기간 연장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 지방국토관리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하천점용허가의 유효기간이 2019. 7. 26.부터 2019. 11. 30.(토요일)까지인 경우 유효기간 말일은 2019. 11. 30. 토요일이나, 그 유효기간 연장신청 제출기한은 「민법」 제161조를 준용하여 2019. 12. 2.(월요일)까지다.

마. 인허가 등의 유효기간

「도로교통법」 제91조(임시운전증명서) ① 시·도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이 임시운전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시운전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단서 생략>

1 ~ 2. <생략>

3. 제93조에 따른 운전면허의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 대상자가 운전면허증을 제출한 경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8조(임시운전증명서) ② 제1항에 따른 임시운전증명서의 유효기간은 20일 이내로 하되, 법 제93조에 따른 운전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처분 대상자의 경우에는 40일 이내로 할 수 있다. 다만, 경찰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을 1회에 한하여 2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 임시운전증명서의 유효기간이 2017. 8. 29.부터 2017. 10. 7.(토요일)까지인 경우 위 증명서의 유효기간이 2017. 10. 9.까지로 연장되는 것은 아니다.

임시운전증명서는 40일 이내로 유효기간을 정하고 그 유효기간의 말일이 토요일에 해당하더라도, 특정된 날까지 일정한 의사표시나 의무 이행을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어서 「민법」 제161조는 준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임시운전증명서에 기재된 기일인 2017. 10. 7.까지만 유효하다.

2. 국민의 권익 제한이나 의무가 지속되는 기간의 계산(제6조 제2항)

제6조(행정에 관한 기간의 계산) ② 법령등 또는 처분에서 국민의 권익을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 권익이 제한되거나 의무가 지속되는 기간의 계산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르는 것이 국민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경우에는 기간의 첫날을 산입한다.
2.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기간은 그 날로 만료한다.

법령등 또는 처분에서 국민의 권익을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 권익이 제한되거나 의무가 지속되는 기간의 계산은 기간의 첫날을 산입하며,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도 기간은 그 날로 만료되도록 하였다. 다만, 이에 따르는 것이 국민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제6조 제1항에 따라 「민법」이 준용되도록 하였다.

즉 제6조 제2항은 제6조 제1항에 대한 특별규정으로 국민에게 침익적인 행정작용을 대상

으로 한다. 이 규정은 국민의 권익을 제한하고 의무를 부과하는 기간을 줄여 국민 권익을 보호하고 국민의 이익 침해를 최소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1) 기간 계산의 특례(제6조 제2항 본문)

가. 법령등에서 국민의 권익을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

‘법령등에서 국민의 권익을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란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서 별도의 집행조치 없이 직접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국민의 권익을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를 말한다. 그 예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 규정을 들 수 있다.

나. 처분에서 국민의 권익을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

‘처분에서 국민의 권익을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란 행정청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국민의 권익을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를 말한다. 영업정지, 면허정지 등의 제재처분을 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이러한 제재처분의 경우 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첫날을 산입하며, 공휴일 등 여부와 관계없이 말일에 기간이 만료되도록 한 것이다.

예를 들어, 「도로교통법」에 따라 100일간의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하려는 경우 2021. 6. 11.이 첫날이고 그 말일이 2021. 9. 17. 토요일인 경우에도 그 말일로 운전면허정지기간이 만료된다.

또한 “영업정지처분에 대하여 법원이 집행정지결정을 하면서 주문에서 본안판결 선고시까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도록 선언하는 경우 본안소송의 판결선고와 동시에 영업정지처분의 효력이 부활되어 처분에서 정하였던 정지기간(정지결정 당시 이미 일부 진행되었다면 나머지 기간)은 이 때부터 다시 진행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이므로, 정지기간 중 집행정지가 이루어지는 경우 나머지 기간 진행의 계산에는 판결선고일(초일)을 산입해야 한다.

다. 제척기간과 소멸시효기간의 계산

행정법관계에서 제척기간은 「행정기본법」 제23조에서와 같이 주로 행정청이 제재처분 등 처분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 즉 처분권한의 존속기간으로 설정되어 있다. 제척기간이 만료하면 행정청은 더 이상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처분을 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행정기본법」 제6조 제2항에 따라 제척기간을 계산할 때 첫날을 산입하고,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도 기간은 그날로 만료하도록 하는 것이 국민에게 유리하다. 그러나 제척기간을 ‘권익이 제한되거나 의무가 지속되는 기간’으로 볼 수 있는가에 대하여는 의문이 있다.

앞서 살펴본 「행정기본법」 초안의 취지를 고려하면 ‘권익이 제한되거나 의무가 지속되는 기간’이란 법령등 또는 처분에서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

과하는 경우 그 법령등 또는 처분에 정한 권리제한 또는 의무의 지속 기간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제척기간은 행정청의 권한행사를 제한하는 기간일 뿐 그 자체로 국민의 권리가 제한되거나 의무가 지속되는 기간이 아니다.

또한 아직 행정청이 권한을 행사하지 않았으므로 제척기간 동안 국민의 권익이 제한되거나 의무가 부과되고 지속되는 상태는 아직 발생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제척기간의 계산은 「행정기본법」 제6조 제2항 본문이 아니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초일을 산입하지 않고, 기간 말일이 공휴일 등인 경우 그 다음날 기간이 만료하도록 해야 한다.

소멸시효기간도 제척기간과 마찬가지로 「행정기본법」 제6조 제2항 본문을 적용하는 것이 국민에게 유리하지만, 그 기간이 ‘권익이 제한되거나 의무가 지속되는 기간’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권익이 제한되거나 의무가 지속되는 기간’을 법령등 또는 처분에서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 그 법령등 또는 처분에 정한 권리제한 또는 의무의 지속 기간을 의미한다고 본다면, 소멸시효기간도 제척기간과 마찬가지로 제6조 제2항 본문에서 말하는 ‘권익이 제한되거나 의무가 지속되는 기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기간 계산의 특례 적용이 국민에게 불리한 경우(제6조 제2항 단서)

「행정기본법」 제6조 제2항 본문 규정은 법령등 또는 처분에서 국민의 권익을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 국민에게 유리하도록 기간 계산의 특례를 둔 것인데, 그 특례 적용이 오히려 국민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6조 제1항이 적용되도록 한 것이다. 따라서 침익적 처분에 대한 기간 계산 특례가 국민에게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에는 첫날을 불산입하고 말일이 공휴일 등이면 그 익일에 기간이 만료된다. 다만, 기간 계산의 특례 적용이 국민에게 불리한지 여부는 해당 법령등이나 처분의 내용과 성격을 전체적으로 판단해야 하고, 개별 사안에서 행정의 상대방인 국민이 처한 특수한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할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일정 기간 이내에 건물을 철거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그 의무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건물에서 퇴거하는 기간이 길수록 국민에게 유리하므로 초일을 불산입하는 「행정기본법」 제6조 제2항 단서를 적용한다. 또 금전납부 의무가 있는 경우 그 납부기한의 계산은 국민의 기한의 이익을 위해 공휴일 등이 만료일인 경우 「행정기본법」 제6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그 익일에 기간이 만료될 것이다.

Ⅲ. 관련 법령

행정에 관한 기간의 계산에 관하여 다른 법령등에서 「행정기본법」 제6조 제1항 및 제2항과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 그 법령등에 따른다. 「행정기본법」과 다른 규정을 두고 있는 법령의 예는 아래와 같다.

법률	조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처리기간의 계산) ① 민원의 처리기간을 5일 이하로 정한 경우에는 민원의 접수시각부터 ‘시간’ 단위로 계산하되, 공휴일과 토요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1일은 8시간의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② 민원의 처리기간을 6일 이상으로 정한 경우에는 ‘일’ 단위로 계산하고 첫날을 산입하되, 공휴일과 토요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민원의 처리기간을 주·월·연으로 정한 경우에는 첫날을 산입하되, 「민법」 제159조부터 제16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세법	제4조(기간의 계산)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기간의 계산은 이 법 또는 그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따른다.
국민건강보험법	제92조(기간 계산)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에 규정된 기간의 계산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의 기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국회법	제168조(기간의 기산일) 이 법에 따른 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첫날을 산입한다.

Ⅳ. 관련 외국 입법례

법률	조문
독일 행정절차법	제31조 기한 및 일정 (1) 기한의 산정과 일정의 결정에는 제2항에서 제5항까지에 의해 달리 규정되어 있지 않은 한, 「민법」전 제187조에서 제193조가 준용된다. (2) 당사자에게 다른 것이 통지되지 않은 한, 관청이 정하는 기한의 진행은 기한을 공표한 다음날과 함께 시작한다. (3) 기한의 종료일이 일요일, 법적인 공휴일 또는 토요일에 해당되면, 그 기한은 다음의 근무일이 경과함과 함께 종료된다. 당사자에게 이 규정을 지적하면서 특정한 날을 기한의 종료일로 통지한 경우에는 이것은 적용되지 않는다.

<p>독일 행정절차법</p>	<p>(4) 관청이 특정한 기간 동안에만 수행을 해야 하는 경우, 그 기간이 일요일, 법적인 공휴일 또는 토요일에 해당되면, 그 기간은 그 마지막 날이 경과함과 함께 종료된다.</p> <p>(5) 관청에 의해 설정된 일정은 그 일정이 일요일, 법적인 휴일 또는 토요일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준수되어야 한다.</p> <p>(6) 기한이 시간 별로 정해져 있으면 일요일, 법적인 휴일 또는 토요일도 산정된다.</p> <p>(7) 관청에 의해 정해진 기한은 연장될 수 있다. 그러한 기한이 이미 종료되었다면, 특히 기한 종료로 발생한 법적 결과를 존속하도록 하는 것이 부당한 경우 소급해서 연장할 수 있다. 관청은 제36조에 따른 기한 연장을 부칙과 결부시킬 수 있다.</p>
<p>대만 행정절차법</p>	<p>제48조(기간의 계산) 기간을 시간으로 정하는 때에는 즉시로부터 계산한다. 기간을 일·주·월·연으로 정하는 때에는 첫날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계산한다. 다만, 법률에서 그날부터 기간을 계산하도록 규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p> <p>기간을 주·월·연으로 정하여 첫날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계산하는 경우 해당 기간의 마지막 주·월·연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하는 날의 전날을 기간의 종료일로 한다. 다만, 기간을 월·연으로 정하는 때에 마지막 달에 해당일이 없는 경우 그 달의 마지막날에 기간이 끝나는 것으로 한다.</p> <p>기간의 마지막 날이 일요일·공휴일·그 밖의 휴무일인 경우 해당하는 날의 다음날에 기간이 끝나는 것으로 한다. 기간이 마지막 날이 토요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주의 월요일 오전에 기간이 끝나는 것으로 한다.</p> <p>인민을 차별하거나 그 밖에 인민에게 불리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그에 관한 기간의 첫날은 시각에 관계없이 1일로 본다. 마지막 날이 일요일·공휴일·그 밖의 휴무일인 경우 계산대로 그 날에 기간이 끝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제2항과 제4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계산이 인민에게 유리한 경우는 제외한다.</p> <p>제49조(우편배달 기간의 공제) 법규에 기초한 신청을 등기우편 방식으로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경우 우편으로 부치는 때에 소인으로 표시된 날짜를 신청 제출 기준으로 한다.</p>

Q&A 질의·답변

Q. 행정에 관한 기간을 계산할 때 어떤 법령을 적용해야 하나요?

A. 행정에 관한 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다음의 순서에 따릅니다. 먼저, 문제된 행정작용의 근거 법령에 기간 계산에 관한 특칙이 있는 경우 그에 따릅니다. 특칙이 없는 경우는 「행정기본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민법」 제155조부터 제16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특히 첫날을 산입하지 않도록 한 「민법」 제157조와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 특칙을 정한 민법 제161조가 중요하게 됩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개별 행정작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민법」 규정과 다른 방식으로 기간을 계산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법령등 또는 처분에서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국민의 권익을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 그 권익이 제한되거나 의무가 지속되는 기간의 계산은 「행정기본법」 제6조 제2항 본문에 따릅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위 본문에 따르는 것이 국민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6조 제1항으로 돌아가 「민법」 규정을 준용합니다.

Q. 「청원법」 제9조 제3항에 따른 청원 처리기간은 「행정기본법」 제6조 몇 항에 따라 계산하여야 하는가요?

A. 「청원법」 제9조 제3항에 따른 청원 처리기간은, 행정기관이 접수한 청원에 대한 내부 심사기간, 즉 행정처리 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을 정한 것이므로, 「행정기본법」 제6조 제2항이 적용되는 국민의 권익이 제한되거나 의무가 지속되는 기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청원법」 제9조 제3항에 따른 청원 처리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행정기본법」 제6조 제1항이 적용됩니다.